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5. 14 선고 2015가단20270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피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 2015. 5. 1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7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사 진화원

목 록

1. 여주시 E 대 630㎡

2. 여주시 E 지상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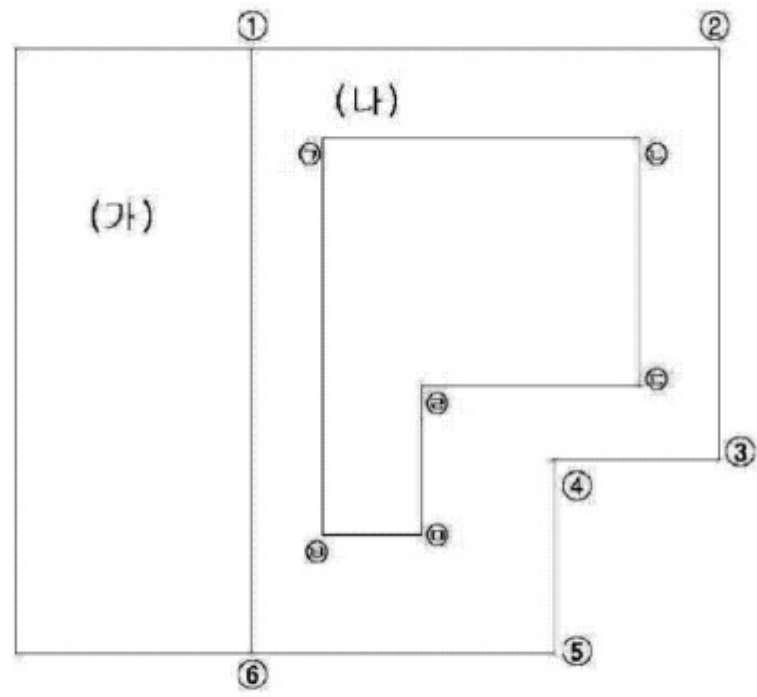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9.17㎡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9.17㎡].

도면



청 구 원 인

1. 가. 원고의 부(父) F는 1982. 1. 20. 증여를 원인으로 1994. 6.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5.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7.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가. G은 1997. 10. 31. F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이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내) 부분 4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다가 사망하였고, G의 처(妻)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 중 3/7 지분, G의 자녀들인 피고 C·D가 이 사건 건물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01. 6.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나. 가사 G이 F와 사이에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목적으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에 있어서 대주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민법 제613조 제2항),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사용대차계약에 관한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사용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끝.